



동일교육통신

청렴 2019-1호
2019. 3. 5.(화)
발행인 신은숙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2019년 새학기를 맞아 깨끗하고 투명한 동일유치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에게는 형벌(과태료)과 함께 징계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동일유치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유치원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유치원이나 교사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교단에서 유아교육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유치원현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뒷면의 청탁금지법 사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학부모님, 어떤 경우라도 교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즉시 학부모님께 반환한 이후에도 부모님께 3배의 과태료를 청구하여야 하오니 선생님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만 많이 표현해 주시고, 일체의 금품(모바일 상품권 포함)은 제공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자진신고 관련 판례

연번	위반 사례	처리 결과
1	초등학교 졸업앨범 납품업체가 교감 책상에 2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두고 감 → 교감이 현금 즉시 반환 처리 후 자진 신고함	교감 : 처벌없음 학부모 : 과태료 3배 부과
2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기프트콘(커피 4만원 상당)을 보냄 → 해당 교사가 즉시 반환하고 학교에 자진신고함	교사 : 처벌없음 학부모 : 과태료 3배 부과
3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가 회의 종료 후 음료수(1만원 상당)를 회의장에 두고 감 → 음료를 발견한 교사가 지체없이 학교에 자진신고 후 학부모에 반환함	교감 : 처벌없음 학부모 : 과태료 3배 부과

★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신고 센터**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동일유치원에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pen.go.kr) 민원마당 및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051-8600-245

▶ 동일유치원 신고센터

- 동일유치원장 전화(☎ 051-468-9824)

2019. 3. 5.

동일유치원장 신은숙